

2026년 한국농업기술진흥원-LS엠트론-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융복합 기술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LS엠트론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수한 민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실증 및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6년 「융복합 기술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에 참여할 기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2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LS엠트론 대표이사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1 **공고 개요**

□ **사업명** : 2026년 「융복합 기술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 **사업목적**

- 대·중견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망 농업기업 집중 육성지원
- 대·중견기업의 수요 기술·BM과 매칭되는 유망기업을 선발하여 오픈이노베이션* 연계 및 제품·서비스 신속 상용화 지원

* 유망기업 기술검증(PoC), 기술개발(R&D) 협력, 전략적 투자(SI), 판로개척 등

□ **협업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LS엠트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모집대상** : 민간기술 보유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스타트업) 등

□ **모집규모**

| 지원기업 수 | PoC 지원금 |
|--------|--------------|
| 2개社 내외 | 기업 당 최대 4천만원 |

□ **지원기간** : '26. 5. ~ '26. 11.(약 7개월)

□ **지원내용** :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인프라 등 PoC지원, 선도기업 협업(기술검증 등) 및 후속 상용화 연계 등 스케일업 기회 제공

2 신청대상 및 모집분야

□ **신청대상** : 수요과제 내용에 부합하는 아이디어(BM) 및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스타트업) 등

□ **모집분야** : ①전기트랙터(EV), ②AX플랫폼, ③AI 기술지원

| 순번 | 분야 | 세부 내용 |
|----|--------------|--|
| ① | 전기트랙터(EV) |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기트랙터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전기트랙터 배터리 모니터링 및 진단 알고리즘 개발 |
| ② | AX 플랫폼 | <ul style="list-style-type: none">토지 기반 작업 계획 자동 생성 기능 개발예지 보전 기능 개발운전 습관 분석 에코드라이빙 가이드 개발트랙터 생산의 AX 과제 실행 연계 |
| ③ | AI 기술 지원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CS 인력 AI 트레이닝 챗봇생성형 AI를 활용한 마케팅 |

※ 자세한 수요분야는 [참고1] LS엠트론 수요 과제 리스트 참조

3

지원내용

① 실증(PoC) 비용지원 : 기업 당 최대 4천만원

| 구분 | 지원 세부사항 |
|--------|---|
| PoC 자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C 프로젝트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세는 지원기업에서 부담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사업비 전용통장으로 일괄 지급함 - 지원기업은 운영기관에서 배포하는 「사업비 집행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 관리 하고 사업 종료전 회계정산 및 검증보고서를 득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산정기준은 [참고2] 사업비 집행기준 및 정의 참고 |

② 운영기관 협력 프로그램(안)

| 구분 | 지원내용 |
|--------------|---|
| ▶ 실증(PoC)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S엠트론 현업부서 및 지원기업과의 PoC 진행 * 기술고도화(전문가 멘토링), 사업화(경영관리, BM고도화 등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원) |
| ▶ 인프라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S엠트론 현업부서 매칭 및 R&D인프라(보유장비 등 현물) 등 ▪ 유관기관 네트워킹 및 전문가 매칭 지원 ▪ 기업육성(엑셀러레이팅, TIPS 등) 프로그램 연계 |
| ▶ 기술자문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S엠트론 현업부서 전문가 그룹 활용을 통한 기술 적용성 검토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기술 자문 및 R&D 협력 방향 제시 ▪ 사업화 전문가 매칭을 통한 시장성 검증 |
| ▶ 성과공유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S엠트론 주요 경영진, 투자자 대상 결과물 등 협업 성과 발표 |

* 세부 프로그램 운영은 LS엠트론 등 운영기관 및 최종 선정 기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③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지원

- (자금조달) 투자IR, 정부지원사업 등 자금조달 및 판로개척 지원
- (사업확장) 우수기업-LS엠트론 간 협업을 통한 기술제휴, M&A, 전략적 투자(SI) 등 대형 성과창출과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

4

공고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4. 2.(목) ~ 4. 24.(금) 14: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evalio.kr/apply/>)
- 제출서류 : 붙임 1~2의 서식 활용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필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붙임 1 |
| |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 붙임 2 |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발급 |
| |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각 1부 | 발급 |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발급 |
|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발급 |
| | 재무제표 1부(최근 2년) | 발급 |
| 해당 시 | 실적(매출, 수출, 투자, 고용 등) 및 제안 아이템 관련 증빙서류 | |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5

선정절차

| 공고 및 선정절차 | | 세부 내용 |
|-----------|---------------------------|---|
| 1단계 | 공고 및 접수 4. 2. ~ 4. 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S엠트론 협업 희망 기업모집(기관 홈페이지) |
| ↓ | ↓ | ↓ |
| 2단계 | 서류평가 4월 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 제안서 및 제출서류 검토(3배수 내외 선발) |
| ↓ | ↓ | ↓ |
| 3단계 | 발표평가 5월 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 최종 검토 - 협업제안서 발표(1:1 비즈니스 미팅) 및 LS엠트론 현업 부서-신청기업 간 심층밋업을 통한 지원기업 최종선발 |
| ↓ | ↓ | ↓ |
| 4단계 | 선정결과 발표 5월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선정기업 발표 및 협약체결(5월초) - (협약) 농진원·LS엠트론·전북창조 ↔ 지원기업 |

*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계획, 서류, 증빙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①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도용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 작성된 경우
- ②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③ 동 사업의 사업화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④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신청·접수 마감일('26.4.24)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6.4.24)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⑥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개인, 법인)
- ⑦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⑧ 기타 협업기업(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LS엠트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류접수 시 마감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협업제안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협업제안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자(기업)가 없을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신청기업 대표가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지참 필수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신청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선정자는 협업제안서에 명시된 사업화 및 시제품제작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선정자가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지원금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는 협업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8 문의처

| 문의처 | 연락처 | 이메일 |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063-919-1360 | factgong@koat.or.kr |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063-220-8936 | jbcic@ccei.kr |

| 분야 | 세부 과제 | 선별 영역/우대조건 |
|-------------|---|---|
| ① 전기트랙터(E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트랙터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량 모니터링 솔루션 적용 탄소 배출량 추정 방법론 개발·테스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산업 분야 관련 경험 보유 업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트랙터 배터리 모니터링 및 진단 알고리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터리 관련 데이터 모니터링, 안전 관련 진단기능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산업 분야 관련 경험 보유 업체 |
| ② AX 플랫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기반 작업 계획 자동 생성 기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API 연동 및 작업 스케줄링 엔진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공공데이터 연동 애그테크 기업, 스케줄링·플래닝 SaaS 개발 전문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지 보전 기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L 기반 예지보전 모델 및 알림 시스템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예지보전(PdM) AI 전문업체, 농기계·건설장비 적용 레퍼런스 우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 습관 분석 에코드라이빙 가이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 행동 분석 AI + 모바일 앱 내 기능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앱 + 운전 행동 분석 AI 보유 업체, UBI보험·커넥티드카 분야 경험 참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랙터 생산의 AX 과제 실행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라인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MES 커스터마이징 경험 업체, 스마트팩토리 구축 레퍼런스 필수 |
| ③ AI 기술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 인력 AI 트레이닝 챗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LM 기반 RAG 챗봇 개발 및 LMS 연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LM/RAG 챗봇 전문업체 또는 기업용 LMS 솔루션 보유사, 제조업 기술 문서 기반 챗봇 경험 우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를 활용한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 생성·보정 관련 LSM 전용 에이전트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산업 분야 관련 경험 보유 업체 |

참고2

사업비 집행기준 및 정의

| 구 분 | 기준 및 정의 증빙서류 | | | | | | |
|----------|---|---------|---------|-------|------------------------------------|----------|--|
| 인건비 | <p>▶ 지원기업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신규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50% 이하로 구성 ** 신규직원의 범위는 채용일부터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인력을 포함함</p> <p>가. 참여인력이 해당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p> <p>나. 지원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p> <p>다. 인건비의 산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309 701 1370 913"> <thead> <tr> <th data-bbox="309 701 493 734">구 분</th> <th data-bbox="493 701 1370 734">세부 산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09 734 493 779">법인사업자</td> <td data-bbox="493 734 1370 779">■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여/12 × 참여기간 × 참여율</td> </tr> <tr> <td data-bbox="309 779 493 913">개인사업자 대표</td> <td data-bbox="493 779 1370 913">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 ■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 이하인 대표자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 고용노동부 최근년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기준 </td> </tr> </tbody> </table> <p>※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월 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p> <p>※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p> <p>▶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 인력 * 지식서비스 분야 개발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인력의 인건비는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현금으로 계상 가능</p> <p><필수증빙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월별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② 해당 인력에 대한 계좌이체 증명 | 구 분 | 세부 산정기준 | 법인사업자 |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여/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개인사업자 대표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 ■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 이하인 대표자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 고용노동부 최근년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기준 |
| | 구 분 | 세부 산정기준 | | | | | |
| 법인사업자 |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여/12 × 참여기간 × 참여율 | | | | | | |
| 개인사업자 대표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 ■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 이하인 대표자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 고용노동부 최근년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기준 | | | | | | |
| 재료비 | <p>▶ 지원기업의 PoC 추진과 관련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또는 원료 구입비로 집행 * 시제품은 제품 개발과정에서 양산 전 제품의 디자인 및 설계상 문제를 확인하거나 가능성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삼아 만들어보는 제품을 의미함 ** 재료는 시제품의 부속품 또는 가공(화학적, 물리적 작용을 통해)되어 제품의 일부가 되는 재료를 의미 *** 시제품 포장용기(포장지)는 재료비가 아님 **** 기존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해당 되지 않음</p> <p>가. 보관 및 유통이 용이하여 재판매가 가능한 재료는 원칙적으로 구매 불가 * 단, 시제품의 일부가 되어 재료 자체로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협업제안서 상의 제품 제작 시 필요 연관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구매가능</p> <p>** 재료 구매 수량을 늘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정산 처리한 후 되돌려 받은 경우는 환수 및 사업 중단 조치</p> <p>나.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동 PoC 자금으로 집행 불가하며, 지원금 집행 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p> <p><필수증빙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거래처 사업자등록증(해당 분야와의 업종 및 업태 연관성 확인)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③ (전자)세금계산서(카드결제 시 제외) <p>* 온라인 구매 시 판매자의 업태 및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판매자정보 캡처 등)</p> <p>** 해외업체와 거래 시, 인보이스(invoice),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계약서 등 (단, 해외 거래업체의 사정에 따라 일부 증빙이 불가한 경우 농진원 판단에 따라 생략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검수조서(재료 구입 실물 사진 등 자체 양식을 따름) | | | | | | |

| 구 분 | 기준 및 정의 증빙서류 |
|-----------|--|
| 외주 용역비 | <p>▶ 지원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p> <p>* 시제품 개발, 제품기획, 제품 시장조사, 포장지 디자인 개발, 브랜드 및 로고 디자인 개발이 이에 해당</p> <p>가. 용역업체에서 일부 과업을 재하청하는 경우는 PoC 지원금 집행이 불가하며, 최초 계약 체결한 용역업체에서 모든 과업을 완료하여야 함</p> <p>나. 용역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함. 단, 필요 시 용역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의할 수 있음</p> <p>다. 용역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p> <p>라. 외주용역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 잔금)할 수 있음.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할 수 있음</p> <p>※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 불가</p> <p>마. 운영기관은 해당 지원기업의 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물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함</p> <p>바. 제안서와 최종결과물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최종결과물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 조치 할 수 있음</p> <p><필수증빙서류></p> <p>① 용역 계약서(과업내용 포함)</p> <p>② 거래처 사업자등록증(해당 분야와의 업종 및 업태 연관성 확인)</p> <p>③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p> <p>④ 비교견적서(용역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경우)</p> <p>⑤ (전자)세금계산서(카드결제 시 제외)</p> <p>⑥ 결과보고서</p> |
| 임차비 | <p>▶ 해당 아이템 개발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p> <p>가. 임차비용은 PoC 수행과의 연관성이 명확해야 하며, 실제 사용내역이 확인 가능해야함</p> <p>나. 임차기간은 사업기간 내에 한정되어야 하며, 장기임대나 자산취득 성격의 집행은 불가</p> <p>다. 임차료는 적정성(시장가격 수준)검토가 필요하며, 과도한 임차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p> <p>라. 운영기관은 제안서 대비 임차목적 및 실사용 내역,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함</p> <p>마. 허위 임차, 미사용, 사적 사용 등이 확인 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가능</p> <p><필수증빙서류></p> <p>① 임대차 계약서(임차대상, 기간, 비용 명시)</p> <p>② 임대인 사업자등록증(해당 분야와의 업종 및 업태 연관성 확인)</p> <p>③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p> <p>④ (전자)세금계산서(카드결제 시 제외)</p> |
| 광고 선전비 | <p>▶ 협업제안서상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마케팅·홍보 비용(운영기관 사전 승인필요)</p> <p>* 온오프라인 광고 집행, 홍보물 제작, 프로모션 운영, SNS콘텐츠 제작, 온라인 플랫폼 광고 등이 이에 해당</p> <p>가. 광고선전비는 제안서에 명시된 홍보·마케팅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에 한하여 인정함</p> <p>나. 집행내역은 구체적인 대상, 기간, 채널, 방식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단순 기업 홍보나 간접적인 활동은 불인정</p> |

| 구 분 | 기준 및 정의 증빙서류 |
|-----------------|---|
| | <p>다. 광고물은 사업 수행 목적, 내용, 참여기관 등이 명확히 표현되어야 함</p> <p>라. 광고대행업체 등 외부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외주용역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p> <p>마. 운영기관은 결과보고서와 광고성과를 통해 실제 집행 및 효과 여부를 검토예정</p> <p><필수증빙서류></p> <p>① 광고 집행 또는 제작 계약서</p> <p>② 거래처 사업자등록증(해당 분야와의 업종 및 업태 연관성 확인)</p> <p>③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p> <p>④ 광고 결과물</p> <p>⑤ (해당시) 광고매체 송출 또는 집행 결과자료 등</p> |
| 무형 자산 취득비 | <p>▶ PoC를 통해 제작하고자 하는 시제품(보유기술)과 관련 있는 산업재산권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인증,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 및 취득 관련 비용, 컨설팅비, 번역비 등 포함</p> <p>가. 시제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내·외 산업재산권, 특허, 인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 취득 및 컨설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p> <p>* 단, 지원금 사용기간 중 출원·등록한 산업재산권 비용 지급 가능(등록 성공보수도 포함)</p> <p>** 해외 산업재산권, 특허, 인증 등 취득 과정에서 필요한 번역비용도 집행 가능</p> <p>*** 산업재산권 또는 인증 취득을 위한 전문가 활용 비용도 포함</p> <p>나.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지원기업 본인(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출원·등록)이어야 함</p> <p>* 단, 타인 또는 타 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거 공동 출원을 해야 할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 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p> <p>다. LS엠트론 또는 기타 외부 기관의 인프라, 기술, 자산 등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을 출원 하는 경우 향후 소유권 분쟁 방지를 위해 해당기관과의 권리 귀속에 대한 사전 합의서 또는 권리귀속 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함.</p> <p><필수증빙서류></p> <p>① 거래처 사업자등록증(해당 분야와의 업종 및 업태 연관성 확인)</p> <p>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p> <p>③ (전자)세금계산서(카드결제 시 제외)</p> <p>④ (해당시) 권리귀속 확인서 또는 합의서</p> |
| 지급 수수료 | <p>▶ 기술이전비 : 지원기업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국유기술의 이전 및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p> <p>가. 정책적 지원을 받는 국유특허(특허권자가 대한민국) 기술이전은 지원하지 않음</p> <p>나. 대학 산학협력단, 기술거래기관 등 공신력있는 기관이 중개하는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p> <p>다. 기술이전비의 금액 적정성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p> <p>라. 비국유기술이라 할지라도, 전용실시권 및 양도계약 체결 시 집행 가능</p> <p>▶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등록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 재직 임직원들의 참가비까지 집행 가능</p> <p>가. 지원금 사용 기간 내에 개최하는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p> <p>나. 지원업체 소속 직원의 사업화자금 지급 신청 시 임직원 재직 확인을 위한 '4대보험가입자명부' 필히 제출 * 예비창업자의 경우 대표자 및 참여인력까지 가능</p> <p>다. 학회 또는 세미나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함</p> |

| 구 분 | 기준 및 정의 증빙서류 |
|-----|---|
| | <p>▶ 전시회 참가비 : PoC 대상 제품·기술의 시장성 확인, 홍보, 바이어 발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 참가 시 발생하는 부스비, 참가 등록비 등 실비성 경비</p> <p>가. 행사목적과 참가실적이 PoC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함 나. 단순 참관 또는 부적절한 홍보 목적의 참가비는 불인정</p> <p>▶ 시험·인증비 : 시제품의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 인증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집행</p> <p>가. 시험분석의 경우 기계, 식품 등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험, 분석 수수료 지원 나. 제품 인증의 경우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비용과 인증수수료에 한하여 지원 다. 인증의 경우 신청(번역), 심사, 등록 및 갱신비용 지원</p> <p>* 인증에 컨설팅이 수반되는 경우, 참여 컨설턴트 이력 및 컨설팅일지 등 관련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공인기관 또는 일반적 필요성이 입증된 인증만 인정(예 : KC, CE, FDA 등)</p> <p>▶ 회계감사비 : PoC 사업비 정산 또는 사업 종료 시 외부 회계기간을 통해 수행하는 회계 감사 수수료</p> <p><필수증빙서류></p> <p>① 관련 계약서 또는 참가신청서(기술이전, 인증, 행사참가 등) ② (전자)세금계산서(카드결제 시 제외) ③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④ 거래처 사업자등록증(해당 분야와의 업종 및 업태 연관성 확인) ⑤ 결과물 또는 확인자료</p> |
| 여비 | <p>▶ 여비 : PoC 프로젝트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을 위해 지원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이 국내에서 출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비</p> <p>가. 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 실비 기준의 국내출장 경비</p> <p>* 교통비는 실제 사용한 대중교통, 항공, 유류비 등 실비 기준으로 인정 ** 여비지급 기준은 기업 내부 여비기준을 따르되,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름 ***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지원제외</p> <p>나. 출장자는 원칙적으로 지원기업 소속 대표자 또는 4대보험 가입 임직원에 한함</p> <p><필수증빙서류></p> <p>① 교통비, 숙박비 영수증 ② 카드결제 내역 또는 세금계산서</p> |